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2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2노781 사기 미수
피 고 인 이00 (000000-0000000), 기타
주거 계룡시
등록기준지 대구
항 소 인 쌍방
검 사 안형준(기소, 공판), 김동주(공판)
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, 최재혁, 한상복, 송지현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17. 선고 2011고단5223 판결
판 결 선 고 2012. 6. 27.

주 문

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각 양형부당.

2. 이 법원의 판단

가. 양형기준표의 적용

[유형의 결정]

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(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).

[특별양형인자]

-감정요소 :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(미수)

-가중요소 : 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

② 단독범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지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공범을 끌어들이 장기간에 걸친 공범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경우(이 사건의 추가인자)

[권고영역의 결정]

가중영역

[권고 형량범위]

징역 4년 ~ 7년

[일반양형인자]

-가중요소 :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,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

나.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
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도 없지 않지만,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최00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

한 점, 최00이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게 된 점,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무려 2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,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로서 '일벌백계'와 '재발방지'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점을 내세우는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

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,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'1. 당심 증인 최00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, 1. 검사가 작성한 최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'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,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

각 형법 제352조, 제347조 제1항(각 징역형 선택).

1. 경합범 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.

재판장 판사 박관근 _____

 판사 이민형 _____

 판사 박은진 _____